##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김한규・이원택・한준호

박홍배 • 문정복 • 안태준

민병덕 • 신정훈 • 모경종

문대림 · 정준호 · 강경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제1항 전단 중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범 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 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다.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 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임 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 피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전보 등 적절한 조치. 다만,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가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
	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
	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	
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	
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u>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u> 발생	<u>성폭력 범죄, 성</u>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	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	
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	
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생략)
-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 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공무원등"이라 한 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원등에 대 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 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임 용권자 · 임용제청권자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공 무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신 설>

<신 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하도록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 피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전보등 적절한 조치. 다만,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가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비밀을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 <u>④</u> ~ <u>⑦</u> (생 략)

⑧ 고충상담 신청, <u>성폭력 범죄</u>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 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 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등으로 정한다.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underline{ 7} \sim \underline{ 0}$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u> ①</u> <u>성폭력</u>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
롭힘